



축산물 가공 처리법 시행규칙공포

— 본회 법 개정에 따른 건의서 제출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이 지난 9월 1일 공포되었다. 이 법의 공포로 인해 닭, 토끼, 개도 도계장이나 도도장에서 도살하여 판매하게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월간 양계 특집란에 자세히 소개되었으며, 본회는 이에 따른 문제점을 양계인들로부터 청취 정부당국에 건의한바 있다. — 자세한 내용 본문참조 —

닭 경제능력검정소 견학

<고대축산과>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축산학과 학생 30명이 지난 9월 10일 본회 닭 경제능력 검정소를 견학하고 돌아갔다. 축산학과 학생들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10회 산란계 능력검정시험과 과거의 능력검정 결과를 신정일 소장으로부터 설명 들었다.

검정회의 개최

제 9회 산란계 능력검정과 제 7회 부로일러 능력검정 결과에 대한 심의와 현재 실시중인 제 10회 산란계 능력검정의 중간 검토가 지난 9월 23일 대한양계협회 회의실에서 설동섭, 오봉국, 최창

래, 김순재씨등 검정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검정결과는 시험결과를 검정위원들에 의해 다시 세밀히 검토하여 월간 양계 11월호에 발표할 예정이다.

제3회 정기 총회 개최

<부산 경남지부>

— 유관기관과 양축가의 결속다짐 —

부산, 경남지부(지부장: 이병달)는 지난 8월 25일 제 3회 정기총회를 개최, 회원들과의 보

관과의 협조를 돈독히 했다. 이날 정기 총회는 전국강습회와 때를 맞춰 개최하게 되었다.

배합사료 가격 하향조정

— 9월 23일부터 약 10% 인하판매 —

배합사료가격이 9월 23일부터 각 공장별로 약 10%인하된 가격에서 조정 판매되고 있다. 울들

어 사료업체는 2회에 걸쳐 인상을 단행, 양축가의 생산비를 가중시켰으나 국제곡물가의 하락으로 9월 23일부터 135\$ 짜리 배

국산 옥수수 사용하게 되고, 강류사료가격인상이 당초 70%보다 10%가 낮은 60%선으로 인상되어 배합사료 원가상승요인이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농수산부는 당초 민수도입소

과 하락된 옥수수 가격을 적용, 배합사료가격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여 양축가에 부담한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료가격의 하향조정으로 산란조기 사료는 75년 3월 20일의 kg당 판매원가가 94.17원에서 약 8~9원이 하락시킬수 있는 요인이 있다. 한편 양돈 및 축우용 사료는 품질을 보장하여 종전가격에 의해 사료를 판매할 것으로 본다. 사료협회는 이에 따른 공문을 각 회원들에게 시달하면서 품질위주의 적정가격을 유지해 줄 것을 시달한바 있다.

한풍산업주식회사로

상호변경

— 구 한국사료첨가제 공업사 —

전염성위장염치료약 콰트렉스와 양돈용사료첨가제 씨에스피-250등 많은 우수 수의약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한국사료첨가제 공업사가 한풍산업주식회사(대표: 최죽송)로 상호를 변경하고 보다 폭넓게 양축가를 위한 의약품 생산 판매와アフター서비스를 하리라 한다. 한편 사무실을 중구 북창동 72-2 삼영빌딩 8층으로 이전 하였다. (전화 22-1120).

또 양양에 공장을 확장, 9월 1일 부터가동하므로서 보다 많은 약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 세원사료(주)김상근씨 상부로승진.

내년도20개 대단위 목장 조성계획

<농수산부>

농수산부는 내년에 전국 20개 지역에 대단위 목장을 조성키로 했다. 농수산부의 대단위 목장 조성계획에 의하면 재벌기업이 참여하는 대단위 목장을 조성키 위해 총 10억원의 장기저리자금을 지원, 한우 및 젓소입식, 초지자원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농수산부는 금년말까지 적지선정을 마치고 참여 희망기업의 신청을 받아 목장조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펴기로 했다. 당국의 지원방안은 축산업개발자금에 대한

종합소득세면제, 목장조성을 위해 취득한 토지, 건물의 취득세, 재산세, 영업세등을 면제하는 세제상 특전부여 등이다. 지원 자금은 연리 9%의 장기 축산 자금이며 목초종자, 비료시멘트 등 각종 시설자재의 우선공급, 농촌지원 축산기술공무원 파견 및 기술지도의 혜택도 받게된다고 한다.



용인 자연농원 공작새 분양개시, 사자도 첫 해외 수출

경기도 용인군 포곡리에 소재하는 450만평 규모의 종합 산림개발단지의 명칭을 7월 15일부터 용인자연농원(대표: 이병철)으로 결정하였다.

용인자연농원은 지난 7월 24일 자연동물원에서 번식한 4개월령의 새끼사자 3마리를 일본 삼중현에 있는 일본 평 양식소와 마리당 8백달러에 수출계약하여 JAL기편으로 공수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수출된 이 새끼 사자 3마리는 모두 형제간으로서 이들 부모는 3년전 미국에서 수입한 것이라 한다.

분만되자 곧 인공포유를 시켜 4개월간 훈련을 시킨 새끼사자

이기 때문에 관리자를 잘 따르며 재물을 부렸다하는데 800불은 너무 험값에 팔렸다고 모두들 말하고 있다.

용인 자연 농원의 공작새는 공작이 3300여수에 달하는데 현재 국내의 일반인에게 분양하고 있다.

그 이외에 각종 진귀종의 동물들이 많으며 내년 5월 1일 동물원을 개장할 예정으로 있다고 하며, 이 동물들의 사육사만 해도 39명으로 이분야를 전공한 엘리트 기사들로 구성되어 대단위 종합농장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무간소화를 기할 수 있고 자체내 전문가 양성으로 기술향상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또한 낙농, 유업계의 실패를 수시로 파악하여 장기적인 낙농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자료를 제공, 해마다 거듭되는 원유수급 불균형등 낙농발전 저해요인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있다. 유가공협회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이전 및 전화변경 ■

○ 국립농업경제 연구소

- ① 서울서대문구 합동 111번지 대왕빌딩 8층으로 이전(9월 6일)
- ② 전화번호: 소 장 실 ㉠-2178
관 리 과 ㉠-9948
농업개발과 ㉠-1673
농촌경제과 ㉠-3952
농산경제과 ㉠-1671
농업유통과 ㉠-3953
농업개발 과 ㉠-1672
분 석 과

○ 동양사료(주)

- ① 서울 중구 충무로 4가 12의 1 오성빌딩 506호로 이전.
- ② 전화번호 ㉠ 9180, 9109

○ 축산경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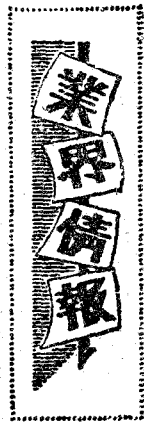
축산인의 벗 축산경영자의 전화번호가 23-7462로 변경되었다.

유가공 협회 설립추진

—낙농과의 균형발전 위해—

유가공업체는 낙농업과 유가공업체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 유가공협회 설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그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는 유가공업체의 공동의견을 정부시책에 올바르게 반영시켜 업계실정에 맞는 낙농정

책을 마련하게 하는 한편 정부가 맡고 있는 일부 유가공업무를 협회가 담당 자율적인 유업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업계는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추천권과 우유검사권을 협회가 맡을 경우 필요한 경비절감과 업



가축 자가사육증명 발급요령 시달

<종축개량협회>

종축 개량협회는 양축가들이 가축 자가사육증명을 발급하는데 따른 문의가 많음에 따라 양축가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 요령을 다음에 알리고 있다.

1. 제정목적

영업세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비과세 영업임을 확인하고자 원천징수자의 요청에 의하여 발급되는 자가 사육증명서의 발급지침을 제정하여 철저한 세수증대와 계통출하를 촉진케 하고 도축질서를 확립코져 하는데 있다.

2. 발급대상 가축

축산법 및 축산법시행규칙에 명시된 가축.

3. 자가사육의 범위

농가가 자가축사와 가축을 보유하고 3개월이상 직접보유 가축을 사육하는 것은 자가사육으로 인정한다.

4. 자가사육 증명의 발급절차

가. 자가사육 증명을 원하는 농가는 별첨서식에 당초 구입당시의 매매전표 (우, 돈에 한함) 을 첨부하여 이(里) 동(洞)장을 경유하여 관할 읍, 면에 신청한다.

나.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에서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증명을 발급한다.

5. 자가사육 증명발급기관 및 원천세

정수 의무기관에서의 유의하여야 할 사항

가. 가축상인이 가축상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은 발급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원천세 정수 의무기관에서는 가축매매 대상자와 사육증명의 사실여부를 주민등록증과 대조확인한다.

다. 자가사육 증명기간인 읍면에서는 본인 이외의 증명서 발급을 금지한다.

라. 발급기관에서는 신청인에 요구하는 대상가축의 성별, 연령, 특징등을 대조하여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마. 원천세 정수 의무기관에서는 대상가축과 자가사육 증명서 내용에 기재된 사실과 대조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축 자가 사육 증명서

번호

신청인주소 :

성명

(주민등록번호)

다음 가축은 본인이 사육하고 있는 가축으로써 ()에 필요하오니 사실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육장소

나. 사육가축 축종별 두수

다. 사실을 증명하고자 하는 가축

축종별	성별	연령	특징	구입 또는 생산년월일	적요

1975년 월 일

원인 (인)

면 (읍) 장 귀하

상기 사실을 증명함.

1975년 월 일

면 (읍) 장 (인)